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61
----------	-------

발의연월일 : 2025. 8. 20.

발 의 자 : 이소영·김종민·정준호
김정호·김태년·김원이
권향엽·임미애·박지혜
박정현·허영·민형배
임호선·백승아·송재봉
한정애·위성곤·차지호
의원(18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소송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에 따르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는 ①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②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

하고, ③ 그 누적 배출량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즉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이를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적용할 원칙과 고려사항에 명확히 규정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고, 탄소예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35%, 2035년에 61%, 2040년에 80%, 2045년에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로 정함(안 제8조제2항).

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배출량의 기준을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2항 후단).

마.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에 탄소 예산, 과학적 분석과 예측, 국제적 행동의 기준을 포함함(안 제8조 제6항).

바.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사.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둠(안 제22조의2).

아.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SF6)”을 “(SF6), 삼불화질소(NF3)”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말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제2항(중전의 제1항) 중 “2030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연도”로, “35퍼센트”를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제한 순배출량으로 본다.

1.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 2035년: 100분의 61 이상
3. 2040년: 100분의 80 이상
4. 2045년: 100분의 90 이상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9. 제8조의2에 따라 산출된 국가 탄소예산
10.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11.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탄소예산 산출) ①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후과학위원회) ① 고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1. 대기, 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하고 있는 자

3. 국제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③ 전항 위원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사 및 의견 청취, 사무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후과학위원회”로, “심의·의결”은 “직무수행”으로 본다.

⑤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업무로 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후과학위원회의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후과학위원회가 작성하는 의견 및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는 비공개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석탄화력발전의 종료) ①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40년까지 석탄을 연료로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석탄화력발전소”라 한다)을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계획과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5. ----- ----- ----- ----- ----- ----- -----(SF6), 삼불화질소(NF3) -----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말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신 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해야 할 ক্ষ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②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연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

----- . 이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으로 본다.

1.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 2035년: 100분의 61 이상
3. 2040년: 100분의 80 이상
4. 2045년: 100분의 90 이상

③ -----
----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

----- .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신설>

<신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④ -----
----- 의하여 2
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8조의2에 따라 산출된 국가 탄소예산

10.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11.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제7항-----

-----.

제8조의2(탄소예산 산출) ①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

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 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기후과학위원회) ① 고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신 설>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
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독
립적인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
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
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1. 대기, 해양 등 기후변화에 관
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
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
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국제법 등 기후변화와 관련
된 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
여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
는 자

③ 전항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사 및 의견청취, 사무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후과학위원회”로, “심의·의결”은 “직무수행”으로 본다.

⑤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업무로 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후과학위원회의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후과학위원회가 작성하는 의견 및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결과

<신 설>

보고서는 비공개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석탄화력발전의 종료)

①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40년까지 석탄을 연료로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석탄화력발전소”라 한다)을 전부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계획과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